

##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①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5.05.26.)

②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부위원장과 위원은 평교수 및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활동기간)**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대학입시 원서접수부터 입시 종료후 일정기간까지로 한다.

**제5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시부정 방지대책 수립 및 심의
2. 입시의 주요과정 및 감시에 관한 사항
3. 대학원입시의 주요과정 감시에 관한 사항
4. 편입학시험 주요과정 감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입시공정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소집과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 진행상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획·예산팀에서 담당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